

국내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 대한 초국적 돌봄 연구*

김경학** · 윤밀알***

Transnational Care for Left-Behind Famil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Nepal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im, Kyunghak** · Yoon, Miral***

요약 :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네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의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 네팔방문과 직접적 돌봄, 가족의 한국 초청을 통한 노동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본국 가족에 대한 돌봄을 초국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와 네팔 사회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being in-between)로 인식하는 초국적 시각이 요구된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돌봄은 이주여성의 형제자매 서열에 따른 역할기대, 자녀의 여부, 경제활동 여부, 친정가족원의 국내 체류 여부 등에 따라 그 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초국적 돌봄, 특히 정서적 지지와 출산 및 육아지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돌봄의 호혜적 교환(reciprocal exchange of car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요어 : 네팔결혼이주여성, 초국적 돌봄, 송금, 정서적 지지, 본국방문, 가족초청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transnational care for family members back home among the Nepal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on the bases of some transnational care practices like remittances, virtual intimacy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visit to Nepal, and invitation of family members to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migrant women's care practices properly, Nepalese marriage immigrant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in-between' the societies and cultures of Nepal and Korea.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national care practices of Nepalese women are closely related to the role expectation for the eldest daughter as well as whether or not migrant women have children, jobs, and original family member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highlights that migrant women's transnational care practices should be considered as 'reciprocal exchange of cares' between marriage women and their family members rather than one-way benefits going to the latter.

Key Words : Nepalese marriage migrant women, transnational care, remittance, emotional support, visit to homeland, invitation of original family member

1. 들어가는 말

네팔 여성의 국제이주는 주로 노동이주에 해당한다. 네팔 경제에서 이주자의 송금이 점유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네팔 전체 GDP의 약 32%를 차지할 만큼 높다(Shrestha, 2017). 여성 이주자의 규모는 남성에 비해 규모는 매우 작지만 여성 이주자 대부분이 영국, 일본, 홍콩, 걸프 국가처럼 소위 선진 국가로 이주하고 남성에 비해 소비를 억제하여 되도록 송금을 많이 하는 경향 때문에 이들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결

코 낮지 않다(Gurung *et. al.*, 2011). 네팔 사회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주요 이슈는 당연히 노동이주생활 가운데 임금과 성적 착취와 같은 피해와 이에 따른 네팔 정부의 여성에 대한 국제이주의 금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이든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젊은 네팔 여성과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관한 사연들도 네팔 주요 일간지에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한국 내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를 소지한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126,923명이며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khhkim@jnu.ac.kr)

*** 전남대학교 대학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석사과정(M.A. Candidate, Department of Global Diaspora Studies Interdisciplinary Program,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ymawinner@gmail.com)

(출입국의국인·정책본부, 2016), 이들 대부분은 동아시아 국가(중국과 일본)와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출신이다.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약 1,120명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네팔 출신 이주여성은 전체 약 76%에 해당하는 847명으로 절대 다수이다. 한국의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티벳-버마’(Tibeto-Burman)계 출신으로 이들의 종족 집단(ethnic group)은 타망(Tamang), 구룽(Gurung), 라이(Rai), 림부(Limbu), 셰르파(Sherpa) 등에 속한다. 이들이 ‘인도-아리안’(Indo-Aryans)계 네팔 여성보다 한국 남성의 결혼 대상으로 선호되는 것은 외모가 한국인과 가까운 몽골계(Mongoloids)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피부색 등 외모로 인해 한국인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네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네팔 본국 가족과 초국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실천하는 초국적 돌봄 양상과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전지구화와 국제이주 양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국경을 두고 떨어져 지내지만 가족 공동의 복지와 일체감을 지니며 살아가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Bryceson and Vurela, 2002)이 점차 늘고 있다. 본 연구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흔히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지만, 이들은 본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네팔에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을 두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는 ‘초국적 가족’의 일원인 셈이다.

초국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초국적 돌봄’(transnational care)의 교환이며(Baldassar, 2007; Goulbourne *et al.*, 2010), 정착 국가에서 이주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 본국의 가족원과 다양한 차원의 초국적 돌봄 관계를 유지한다. 사실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관계 유지와 돌봄 실천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교통과 정보통신수단의 혁신적인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초국적 이주자는 국제전화, 화상통화,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서적으로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가상적 친밀감’(virtual intimacy)(Wilding, 2006)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송금과 선물배송 등의 물질적 지원과 본국 방문 및 가족과 친족 구성원을 정착 국가로 초청 하는 등 다양한 돌봄을 실천한다. 이러한 초국적 가족에 대한 돌봄 실천에는 이주 당사자

의 경제적 능력, 돌봄의 의무와 헌신에 관한 문화적 규정, 이주·정착·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이주 국가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한다.

한편 초국적 돌봄에 관한 연구가 해외에 이주한 이주자가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돌봄 제공이지만, 사실은 해외에 거주하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본국 가족들 간에 돌봄이 다양하고 확대된 가족 구성원 간에 순환하고(circulate)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자(Baldassar and Merla, 2014)도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주자와 이주자의 가족과 친족들이 돌봄의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제이주의 맥락에서의 초국적 돌봄은 돌봄이 순환하는 ‘호혜적 돌봄의 교환’(reciprocal exchange of care)의 성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국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갈등, 자녀 양육, 부부 관계 해체 등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이주여성을 국내에 한정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을 본국과 이주 국가 간의 ‘끼여 있는 존재’(being-in-between)로 바라보고 이들 여성들이 이주 후에도 한국과 본국 간의 물리적 경계를 횡단하며 인적, 물질적, 정서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주여성의 초국적 흐름과 연결에 주목한 연구들(허오영숙, 2013; 김혜선, 2014; 김이선 등, 2014; 단효홍·김경학, 2015)은 결혼이주여성이 본국 가족과의 다양한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면서 송금과 물품배송, 정서적 지지, 본국 방문과 가족 초청의 형식으로 본국 가족과 초국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기존 국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이주여성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인 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네팔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소수의 기존 연구(이경, 2010; 김태원, 2014; 이기연, 2015)는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 한국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이들의 임금노동에 내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들을 초국적 이주자로 간주하고 본국 가족과 지속적인 초국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실천하는 과정과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네팔이주여성의 사회·문

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네팔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본국 가족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초국적 돌봄 실천을 살펴보고, 이주 여성의 본국 가족 구조 내의 위치 등 본국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맥락 내에서 네팔 결혼이주여성이 드러내는 초국적 돌봄의 내용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16년 12월 말 현재 국내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를 소지한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126,923명인데 이 가운데 네팔 출신 여성은 847명으로 전체 이주여성의 0.6%에 불과하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인 점과는 대조적으로 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남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현황은 네팔 847명, 파키스탄 122명, 방글라데시 63명, 스리랑카 55명, 인도 32명으로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전체 남아시아 출신의 약 76%를 차지한다.

한국 남성과 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이처럼 적은 것은 남아시아와 한국 간의 지리적 거리감과 인종적이고 문화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낯선 이슬람과 힌두교적 배경을 지닌 여성보다는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교, 불교, 기독교적 배경을 지닌 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가 높다. 한편 결혼 당사자 남성은 이주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의 피부색을 고려하여 인종적으로 몽골계(Mongoloids)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 네팔 출신 이주 여성이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다수인 점과 이들 네팔 여성 가운데 대다수가 한국인 외에도 근접한 ‘티벳-버마’(Tibeto-Burman)계 출신인 타망(Tamang), 구룽(Gurung), 라이(Rai), 림부(Limbu), 셰르파(Sherpa) 종족 집단(ethnic group)에 속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인도아대륙(Indian subcontinent) 전통에 따르면 인도아대륙을 벗어나는 것은 ‘부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며,¹⁾ 특히 여성이 일정한 문화적 범주,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친족, 카스트, 종

교 등 일련의 범주 내에서 정주하고 혼인하는 것이 가족과 친족 및 카스트의 명예를 지키고 종교적 정결함(purity)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네팔 여성의 한국 남성을 비롯한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이 남아시아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작용한다.

국내 847명의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 2016년 12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41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²⁾.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1명의 과반수이상은 주요 공업단지가 위치한 광산구(16명)와 북구(11명)에 거주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전체 대상은 15명인데, 여기에는 13명의 네팔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이주 여성의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노동하고 있는 2명의 이주여성 친정 가족원이 포함되어 있다.³⁾ 전체 13명의 이주여성 가운데 10명의 이주여성 2명의 친정 가족원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여성 본인이나 한국인 남편이 광산구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구에는 네팔 사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자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이주여성들은 ‘민족 식품’(ethnic foods)을 판매하는 상점이 위치해 있고 동일 국가 출신자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등 여러 면에서 광산구에 사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연령대별 이주여성의 구성은 20대가 7명, 30대 5명, 40대 1명이며, 이주여성 2명과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3~25살 사이에 있다. 2009년에 입국한 1명을 제외한 12명의 여성은 2011년~2015년 사이에 입국하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 D와 I(아래 표 1. 참조)를 제외한 11명의 이주여성은 국민의 배우자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지만 공장 등에서 노동하고 있는 6명의 여성들은 국적취득에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현재 출산과 육아로 전업주부인 4명의 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국적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적을 취득하면 공장 노동이 아닌 사무직 등 더 좋은 조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6명의 여성을 제외하고, 7명은 한국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다. 자녀 없는 7명 가운데 재혼 사례인 2명의 30대말~40대 초반의 이주여성은

네팔과 인도에 네팔 남성과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두고 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자녀가 없는 초혼 사례인 5명의 여성은 부부 간의 큰 나이 차이로 남편들이 자녀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종족별 배경은 티벳-버마계 11명(타망 7, 세르파 2, 구룽 1, 마가르 1)과 2명의 ‘인도-아리안’(Indo-Aryans)계로 구성되며 후자 2명의 힌두-아리안은 체트리(Chhetri)와 브라만 카스트에 속한다. 결혼 경로별 구성은 연애결혼 1명과 지인 소개 1명을 제외한 11명이 카트만두 소재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 남성과 혼인하였다. 2017년 6월 현재 13명의 이주 여성 가운데 4명의 전업주부를 제외한 9명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가운데 3명도 출산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이들 역시 자녀가 보육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이주여성들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 가족구성원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며 연구대상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대상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한다.

남성인 연구자가 이주여성을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문화적 특성

| 이름 | 나이 | 지위 | 종족 | 학력 | 현재 직업 | 입국 년도 | 자녀 유무 | 만남 형식 | 초혼/ 재혼 | 기타 |
|----|----|----------|-----------|----------|-----------|----------|------------|-----------|-----------|----------------|
| A | 27 | 이주 여성 | 타망 | 중졸 | 공장 노동자 | 2011 | 무 | 결혼 중개소 | 초혼 | 이혼 |
| B | 41 | 이주 여성 | 타망 | 중졸 | 공장 노동자 | 2013 | 1명 (인도) | 연애 결혼 | 재혼 | 네팔 개인재산 |
| C | 34 | 이주 여성 | 타망 | 고졸 | 공장 노동자 | 2009 | 무 | 결혼 중개소 | 초혼 | 네팔 개인재산 |
| D | 30 | 이주 여성 | 타망 | 대학 중퇴 | 미용사 | 2011 | 1명 | 지인 소개 | 초혼 | 오빠부부 한국체류 |
| E | 38 | 이주 여성 | 타망 | 중졸 | 공장 노동자 | 2012 | 1명 (네팔) | 결혼 중개소 | 재혼 | 네팔 개인재산 |
| F | 25 | 이주 여성 | 타망 | 고졸 | 식당 종업원 | 2015 | 무 | 결혼 중개소 | 초혼 | 부모 한국체류 |
| G | 30 | 이주 여성 | 타망 | 초졸 | 공자 노동자 | 2011 | 무 | 결혼 중개소 | 초혼 | |
| H | 28 | 이주 여성 | 세르파 | 고졸 | 전업 주부 | 2013 | 1명 | 결혼 중개소 | 초혼 | 언니 한국 체류 |
| I | 26 | 이주 여성 | 세르파 | 고졸 | 사무실 근무 | 2012 | 1명 | 결혼 중개소 | 초혼 | 어머니 한국체류 |
| J | 25 | 이주 여성 | 구룽 | 고졸 | 전업 주부 | 2012 | 1명 | 결혼 중개소 | 초혼 | 언니 결혼 이주자체류 |
| K | 27 | 이주 여성 | 마가르 | 고교 중퇴 | 전업 주부 | 2013 | 1명 | 결혼 중개소 | 초혼 | 외숙모 한국체류 |
| L | 27 | 이주 여성 | 힌두 체트리 | 고졸 | 전업 주부 | 2013 | 1명 | 결혼 중개소 | 초혼 | 아버지 한국체류 |
| M | 32 | 이주 여성 | 힌두 브라만 | 고졸 | 공장 노동자 | 2012 | 무 | 결혼 중개소 | 초혼 | 네팔 개인재산 |
| N | 52 | L 부친 | 힌두 체트리 | 중졸 | 축산 노동자 | 2016 | 4명 | - | - | F-1 비자소유 |
| O | 33 | K 숙모 | 마가르 | 초졸 | 공자 노동자 | 2015 | 무 | - | - | F-1 비자소유 |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14년부터 부정기적으로 광산구의 ‘네팔인 교회’에서 만나 안면이 있던 4명의 이주여성조사 연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연구자는 네팔어와 한국어 통역 능력이 탁월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광주출장소에서 이주자를 위한 통역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네팔 여성 GU(여, 36)와 동석하는 조건으로 이주여성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보조원이었던 GU는 네팔인 교회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어 이 연구에 응할 결혼이주여성을 섭외하여 동석하고 네팔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네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상담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식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던 연구보조원 GU는 광주지역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전체 명단과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네팔 공동체 내의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아래 <표 1>의 연구 대상 N과 O는 이주여성의 아버지와 외숙모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인터뷰 역시 연구보조원이었던 GU의 섭외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연구자는 이주여성의 초청에 의해 한국에 체류하며 이주여성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 친정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수의 이주여성 가족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체류 가족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사실 이들 가족의 노동현장에서의 경제활동 자체가 체류자격에 어긋나는 바이기 때문에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의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주 가족원인 N과 O는 연구자와 GU의 합석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이주여성에 대한 주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여성의 가족과 성장배경,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주 동기와 과정,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본국 가족과의 유대 및 돌봄 실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이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D와 I 두 명의 이주여성과는 통역보조 없이 한국어로 그리고 나머지 이주여성과 그 가족원에 대한 인터뷰는 네팔 출신 연구보조원의 통역 도움을 받았다. 심층인터뷰는 2017년 2월초부터 6월말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주로 네팔교회, 이주여성 가정, 광산구의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수행되었으며 인터뷰

는 이주 여성별로 2~4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육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평일 주간에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주말의 주간 시간대에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3. 네팔사회의 가족과 결혼 및 여성의 국제이주

네팔 사회가 약 100개 이상의 ‘종족 커뮤니티와 카스트’(ethnic communities and castes)로 구성되어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네팔인은 ‘인도-아리안’ 계통과 ‘티벳-버마’ 계통 사람으로 대별된다. 네팔사회는 전반적으로 부권사회(patriarchal society)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대해 종속적이다. 여성의 종속성은 교육기회, 경제적 참여, 재생산과 이동(reproduction and mobility)에 대한 자율성, 정치적 참여, 건강과 영양 등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점에서 표출된다(Heidi, 2005).

딸은 출가외인이 되지만 아들은 가문을 잇기 때문에 남아가 선호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 수록 딸은 교육보다 부모의 생업이나 가사를 지원해야 한다. 네팔 정부와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여성 문자해독 비율은 1950년대 2%에서 2001년에는 42.5%로 크게 높아졌다(Mishra, 2012). 그러나 부모가 꽤 많은 가족과 혼담이 있는 경우 교육중인 딸도 혼인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10학년(secondary level) 마치는 어려운 졸업시험(흔히 네팔에서는 ‘iron gate’로 알려져 있음)에 떨어지는 딸은 많은 경우 부모들의 결혼 강요에 직면한다. 네팔에서 결혼은 중요한 인생 과업의 하나이다. ‘인도-아리안’ 집단의 상위 카스트(upper castes), 예컨대 브라만과 체트리 카스트의 여성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 강조되고 재혼이 금지된다. 여성의 물리적 이동 역시 남성 가족원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인다. 타망처럼 티벳-버마 계통의 종족 집단에 속하는 여성이 힌두 상위 카스트 여성에 비해 이동과 섹슈얼리티(sexuality)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지만 이들 역시 여전히 남성 복종적이고 재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네팔 사회의 부모와 자녀 간의 돌봄은 세대 간에 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헌신적이며

자녀 또한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 전통적인 결합가족(joint family)이 점차 줄고 핵가족으로 변화해 가지만, 자녀의 부모 돌봄은 분가 이후에도 유지된다. 연로한 부모를 적절히 돌보지 않는 네팔인은 공동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부모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에 대한 돌봄은 아들의 몫이다. 교육받은 여성이 늘어가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자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 선호도 점차 약화되고 자신의 노후를 아들이 보장해줄 것이라는 부모들의 믿음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오히려 딸이 부모에게 더 효도하고 노년에 부모를 더 잘 돌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보인다(Ojha, 2015).

네팔 정부가 여성의 국제 이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인 인도 국경을 통하거나 이민 중개업자를 통한 이주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노동 이주하는 여성 이주자의 규모나 이주 대상 국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 숙련이주(skilled migration)의 대부분은 간호사의 이주로서 이들은 주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영어사용 국가로 이주한다. 2002~2011년 사이 약 10년 동안 소위 서구 선진국으로 이주한 네팔 간호사의 수는 3,461명이었다(Adhikari, 2012). 반면 단순 노동으로 국제이주를 하는 여성은 주로 인도, 중동 국가,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홍콩 등으로 이주하여 가사노동(domestic works)을 한다. 쿠웨이트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던 네팔 이주여성 '카니 셰르파'(Kani Sherpa)가 고용주 남성에게 강간당한 후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1998년에 네팔 정부는 걸프 국가로의 여성 이주를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후 몇 번에 걸쳐 이를 해제와 금지를 반복하였다. 결국 네팔정부는 2012년에 30세 이하인 여성의 중동 국가와 말레이시아로의 노동이주를 금지시킨 바 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주를 선택한 네팔 여성은 대략 2005년부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카트만두의 관광객의 거리인 '타멜'(Thamel) 등에 성업 중인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결혼식을 한 후 몇 개월 후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이주를 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네팔 여성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본 연구 대상인 13명의 이주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고향은 시골이나 결혼이주 당

시에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한 바 있으며, 19세~20대 중반의 연령대인 어린 여성들이고,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국남성과 결혼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나이 들어 재혼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⁴⁾ 등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한 여성들이다.

이 연구 대부분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에 '돈을 벌겠다는' 경제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오직 결혼이란 인생의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출신 남성과의 혼인을 선택한 이주여성도 있다. 이 연구의 K처럼⁵⁾ 입국한 후 도망가려고 마음먹고 결혼을 선택한 사례 외에 대부분은 결혼 과업 수행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다. 최근 중국 남성을 연결해주는 결혼중개업소가 영업하기 시작했으나, 네팔 대부분의 국제결혼중개업소는 한국 남성을 네팔 여성과 연결하는 일을 한다. 네팔 정부는 2015년부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한국으로 국제이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이 성사된 이주여성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이웃국가인 인도를 통해 여전히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이 연구 대상 가운데 2015년에 입국한 이주여성 F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4. 본국 가족에 대한 초국적인 호혜적 돌봄

네팔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여성들은 본국에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들에 대한 돌봄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본국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본국 가족원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예컨대 2015년 네팔 대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물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⁶⁾. 이주자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에 개입하는 변수에는 가족 관계의 건강성,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원과 시간, 가족 구성원의 역할 기대라는 문화적 개념 등이 있다(Baldassar *et al.*, 2007). 여기서 '가족'이란 단위에 이주여성의 경우 네팔의 친정가족과 한국의 남편과 그 가족원이 포함되며, 특히 한국 남편과 그 가족들과

이주여성 관계의 건강성에 따라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돌봄 실천의 내용은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인 초국적 가족 구성원처럼 결혼이주여성도 본국 가족원에게 규칙적인 국제전화, 화상통화, 바이버(viber)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 현금과 선물을 이용한 물질적 지원, 본국 방문 및 친정 식구의 한국방문 주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돌봄 실천을 하고 있다.

1) 송금 등 물질적 지원

초국적 이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은 초국적 가족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Cuong *et al.*, 2000; Knodel *et al.*, 2000; Thai 2012).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송금은 이주자와 떠나온 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Adams & John, 2005). 초국적 이주자의 송금은 정착지 수입의 일부를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한 ‘돈의 흐름’(money flow)이 아니라, 이주자가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초국적 돌봄 행위의 중요한 실천이다. 네팔은 노동력 송출과 이주자가 보내는 송금이 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교육·의료복지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제 이주자의 송금은 가족원의 의식주의 수준향상, 가족원의 교육의 질과 노부모의 의료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된다. 이 때문에 송금 행위 자체는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실천 행위로 간주된다(김경화, 2014, 40 재인용). 네팔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간주되지만, 네팔과 같은 힌두 문화권(힌두가 아닌 ‘티벳-버마계’ 소수 종족들도 힌두 문화권 영향을 받아 유사함)에서 친정 부모가 출가한 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금기시 된다.

13명의 결혼이주여성은 부모를 비롯한 본국 가족원에게 액수와 규칙성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송금 경험이 있다. 네팔 내부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출가한 딸이 친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국제 결혼한 자신들이 친정으로의 송금하는 것은 관습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혼이주 후

현재까지 가족 구성원에게 규칙적인 송금을 하는 여성은 A, B, C, E로서 이들은 매월 작게는 50만원을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송금하고 있다. 특히 A와 C의 부모는 딸이 한국 남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주노동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남매의 장녀인 A는 2012년 한국 남성과의 이혼 후 현재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본인의 한국생활을 위한 용돈 50만원을 제외하고 매월 70~100만원을 본국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있다. 가난한 농부인 A의 부모는 딸의 송금액을 A의 동생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A의 아버지는 중동 노동자로 8년 일한 경험이 있고 알콜에 의존하면서 A의 송금액을 매달 전액 탕진하고 있다. 네팔 가족들의 A에 대한 현금 요구는 끝이 없으며, A는 2017년 2월에 여동생(21)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라는 어머니의 요구로 200만 원 목돈을 별도로 송금한 바 있다.

4남매의 장녀인 C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월 100만원을 네팔 어머니에게 송금해 현재까지 약 5천만 원 이상을 송금한 바 있다. 20년 이상 인도 직업군인이었던 C의 아버지는 약 월 25만 원의 연금수령자하고 상당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농부이다. C의 형제자매들은 군인과 경찰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에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딸이 노동이주로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이는 C의 어머니는 딸이 보내주는 송금액의 일부만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C의 이름으로 택지를 구입하였다. A와 C의 부모는 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아직까지 부모에게 자신들의 결혼 이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A처럼 이혼상태에 있거나 C처럼 한국 남편과 거의 별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이다.

B는 네팔 남성과의 첫 번째 혼인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2007~2013년에 걸쳐 중동 오만(Oman)의 한국 건설업체 주방에서 일하면서 매달 60~140만원을 아들의 학비로 송금하였다. 오만 근무지에서 한국 남성과 연애 결혼한 B는 2013년에 한국인 남편을 따라 입국하여 공장에서 일한 수입의 일부는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네팔 은행의 자신의 계좌로 저축하고 있다. E는 2012년에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남성과 재혼하면서 카트만두 여동생에게 네팔 남성과의 첫 결혼에서 낳은 딸을 맡겼다. E는 여동생에게 2013년부

터 현재까지 월 50~70만원을 딸과 여동생 생활비로 송금한다. 재혼 사례인 B와 E는 시골의 연로한 부모에게 가끔 용돈을 송금하고 있는데, 딸딸이 아닌 이 여성들은 오빠와 언니가 네팔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2015년 결혼이주로 한국에 입국한 F는 2017년 2월 친정부모의 한국 입국 이전까지 집 근처 식당에서 일한 수입 대부분인 150만원을 매월 카트만두의 아버지에게 송금했다. 2015년 대지진으로 누와코트(Nuwakot) 소재 F의 고향 집이 완파되었으며, 1년 이상의 F의 송금은 카트만두 번두리에 작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4남매 딸딸인 L의 카트만두의 가족은 월세 집에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결혼 당시 23세로 결혼연령이었던 L이 약 2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결혼생활 중에 일을 하여 3명의 동생 교육비 지원과 친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L은 2013년 입국 후 3개월 되던 때부터 공장근무를 시작해 임신하여 일을 중단했던 2015년 후반까지 매월 50만 원 이상을 아버지에게 송금하였다.⁷⁾ 그간의 L의 가족에 대한 송금의 무거운 짐은 아버지의 한국생활이 시작되면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2살 된 딸을 보육원에 맡기게 될 때 무렵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 가운데 본국의 가족원에게 송금하고 있거나 송금했던 경험이 있는 이주 여성에게는 형제자매 중 만이이거나 순위 남자형제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네팔 사회에서 부모와 동생들에 대한 돌봄 책임이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있지만, 이주여성들이 장녀나 '장녀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 이들은 경제적 어려운 네팔 가족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들 부모들은 출가한 딸의 송금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딸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딸의 규칙적인 일정 금액 송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한편 이 연구의 D, G, H, I, J, K, M의 7명의 이주 여성들은 연상의 남자 형제가 있거나 K와 M처럼 송금해야 할 부모가 사망했거나, D, H, I와 같이 친정 식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해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본국 가족원에 대한 송금의 의무를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원의 통과외래와

'다사인'(Dasain)⁸⁾과 같은 종교적 축제 때에만 가족에게 송금이나 선물을 보내고 있다. D는 미용실 근무로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사인' 때에만 부모님께 미화 1천불을 송금하고 자신의 수입은 아들과 본인을 위한 소비에 지출하고 있다. G는 한국 입국 후 2년 뒤인 2013년부터 공장에서 노동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거의 실업상태나 다름이 없는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사인' 축제 때만 부모에게 미화 500불을 송금한다. 게다가 G는 2015년 대지진으로 친정집이 완파되었을 때에도 복구비용으로 친정에 200만원을 송금했다. 남편은 배우자의 가옥이 완파되었다는 것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H와 J는 임신과 육아로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고 이들 네팔 부모 역시 한국 딸로부터 송금을 기대하지 않는다. 부모의 사망으로 돌봐야 할 부모가 없으며 장녀가 아닌 M은 친정식구들에게 가끔 선물과 소액의 송금을 하거나 사업하는 오빠에게 현금을 빌려주지만 정규적 송금행위는 하지 않는다. 약 4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상당한 현금능력을 갖춘 M은 네팔의 본인 계좌에 약 4천만 원의 '비자금'을 저축하였다.

이주여성이 보내는 현금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상 생활비용, 교육비용, 의례비용, 가옥용 토지 구입 건축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주 여성의 동생들은 공립학교보다는 교육의 질이 좋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결혼식과 축제 등의 의례 시에도 이주여성의 송금이 발생한다. 특히 네팔 남성과의 첫 번째 혼인으로 낳은 딸의 교육과 양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E의 네팔 여동생은 E의 송금을 받아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 연구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이 형제자매 관계에서 만이인 경우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의무를 심하게 느껴 임신과 육아기간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본국 송금을 실천하고자 한다.

2) 정서적 상호 지지

통신수단의 혁신적 발달은 물리적 거리를 압축함으로써 '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istance)을 가져왔으며(Cairncross, 1997), 이는 초국적 가족관계 유지에도 크게 기여한다. 유무선 통신 수단은 초국적 이주자와 모국의 가족을 연결해 주는 '사회적 접착제'

(social glue) 역할을 한다(Vertovec, 2004). 정보통신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또는 ‘친족 업무’(kinwork)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김경학, 2014, 43 재인용). 토마스(Thomas, 1993)는 특정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감정 상태’를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의 부모와 가족구성원에게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안부를 묻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본국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행위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네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전화, 화상통화, 바이버(viber)와 같은 SNS를 이용해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는’(caring about)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산간 지역에 사는 부모조차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셀 폰(cell phone)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모든 이주여성은 부모와 친정가족들과 셀 폰을 통해 연락한다.⁹⁾ 네팔 친정집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 화상통화가 어려울 경우 이주여성은 모국 방문 시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준다. 셀 폰을 선물했음에도 와이파이 없이는 화상통화와 자유로운 안부 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도착 후 남편이 셀 폰을 구입해 주면서부터 본국 가족들과의 소통이 시작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러 어려움, 특히 이주여성의 남편과 시댁 식구와의 갈등으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은 본국 가족원과의 통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지만, 친정 부모보다는 형제자매와 친족들과 이런 어려움을 의논하고 위로 받는다. 한국 입국 1년 만에 이혼한 A는 남편의 구타와 시어머니의 언어적 폭력으로 이주여성 컴퓨터로 피신한 바 있다. 그녀의 부모는 자신의 한국 체류를 노동이주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카트만두의 막내고모에게 셀 폰으로 남편 구타와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위로 받은 바 있다.

한국남성과 재혼한 E는 한국 입국 당시 13살이던 딸을 카트만두의 여동생에게 맡겨 놓았다. E는 매일 딸(현재 17세)에게 화상통화로 관심을 표현하고 “엄마의 한국 남성과의 재혼이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 있음을 자주 강조한다. 또한 그녀는 딸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일상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며, 복장착용을

비슷한 일상생활을 점검하는 등 ‘초국적 엄마노릇’(transnational mothering)을 하고 있다. 한국남성과 재혼한 B 역시 인도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바이버’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바이버를 통해 매일 만나는 아들의 목소리는 B의 한국 결혼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일찍이 사립학교 기숙사에 맡기고 오만과 한국에 살면서 아들을 직접 돌보지 못한 B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교차할 때마다 아들에게 바이버를 하게 된다.

이주여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서적 지지는 한국에서 네팔 가족원에게 하는 ‘일 방향적’(unidirectional)인 것이 아니다. 특히 카트만두에 사는 J의 엄마(58)는 한국의 딸에게 하루에 4~5회의 바이버를 이용한 무료 국제전화를 한다. 10년 전에 경남 함양의 농촌으로 시집간 큰딸(33)과 둘째딸 J와의 SNS를 통한 연락은 어머니의 일상이 되었다. 엄마와 딸 간의 통화 내용은 당일 식단 등 일상적인 잡다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러한 SNS를 이용한 가상세계에서의 어머니와 딸들의 만남으로 이들은 늘 함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큰딸로서 부모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살아온 C는 주일마다 1~2회 시골의 부모에게 국제전화를 한다. 지금까지도 이주노동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엄마와의 통화는 행복하지 않은 C의 결혼생활에 잠시 위로가 된다. 사실 C의 한국인 남편은 2009년 결혼한 이래 국내 다른 지역에서 머물면서 C와 함께 지낸 적이 없으며, 둘 사이에 아이 갖는 것도 반대한다.

일부 이주여성의 가족 구성원은 네팔 밖의 다른 국가에서도 살고 있다. D의 오빠와 언니는 인도에서 학업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F의 여동생은 사이프러스(Cyprus)에서 가사노동하고 있고, M과 마음이 가장 잘 통하는 이모는 홍콩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다. 이들은 네팔과 네팔 밖 해외의 형제자매와 친족 구성원과 SNS를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주여성들이 초국적 통신 플랫폼인 페이스북 북이나 바이버를 통해 본국 부모님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도 적지 않다.

3) 네팔 방문과 직접적 돌봄 실천

초국적 돌봄은 근거리에서 직접 행하는 돌봄과는

차이가 있다. 국제이주를 함으로써 부모나 자녀에 대해 근거리에서 일상적 방문과 식사제공 및 간병 등을 못하기 때문에 성인 이주자는 본국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죄의식과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자들은 본국 방문의 기회를 만들어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발다사와 발독(Baldassar and Baldock, 2000)은 이주자가 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본국 가족원을 직접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고향 방문은 이주자 자신에게도 잠시나마 향수병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본국 부모에 대한 돌봄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본국 방문은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이 열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을 방문하는 것은 항공료와 선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일상에서의 이주여성의 역할 공백이 발생하기에 이주여성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남편들은 이주여성의 본국 방문을 허용하는 편이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시댁의 간섭을 받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본국 방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 남편과 시부모는 본국 방문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육아 등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4명의 이주여성들은 본국 방문에 요구되는 경비를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여성은 남편이 본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으로 경비 전액을 부담한다.

한국에 친정가족이 있어 잦은 네팔 방문이 절실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결혼생활 3~7년 사이에 1~4회의 모국을 방문하였다. 본인보다 25세 나이가 많지만 포클레인 2대를 소유하여 경제력이 있는 J의 남편은 J의 본국 방문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4회의 네팔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J와 같이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한 경우와 재혼 사례인 B의 한국 남편을 제외하고, 모든 한국 남편들은 결혼하기 위해 처음 네팔을 방문한 때를 제외하고 결혼생활 중에 네팔 처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다. 네팔을 두 번 방문한 재혼 사례 B를¹⁰⁾ 제외하고 남편의 처가방문을 꺼리는 것을 이주여성들은 가난한 네팔과 친정집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C의 사례는 이주여성의 본국 방문에 종족 문화적 요인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C는 7년 만에 네팔을 방문했다. 그녀는 부모를 보고 싶어 본국 방문을 하고 싶었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사실 C의 한국인 남성과의 '비밀스런' 결혼은 외삼촌 아들과의 결혼을 강요하는 '교차 사촌혼'(cross-cousin marriage)과 같은 '타망'(Tamang) 결혼 관습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의 일환이었다. 여전히 미혼으로 알고 있는 어머니가 사촌과의 '교차 사촌혼'을 거듭 강요할 가능성 때문에 C는 본국 방문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2016년 그녀의 고향 방문은 그녀에게 7년만의 첫 방문이었으며 당시 그녀는 부모와 형제를 위한 다양한 한국 선물을 가져갔다. 그녀는 그간 못했던 '딸 노릇'하느라 항공료를 포함해 약 600만원의 경비를 네팔 방문에 지출하였다.

딸을 두고 온 E는 5년의 한국생활 가운데 단 한번 네팔을 다녀왔다. 여동생 편에 두고 온 딸을 생각하면 매년 방문하고 싶지만 항공료조차 지원해주지 않는 한국인 남편¹¹⁾은 그녀의 네팔 방문에 늘 부정적이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여 모은 700만원을 2016년 고향 방문 시에 항공료와 선물비 및 체재비로 지출하였다. 그녀는 딸에게 줄 노트북과 셀 폰을 포함해 여러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했다. 특히 그녀는 네팔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동생의 병원비를 지원하였고 지진으로 완파된 시골 가옥 옆에 간이 가옥을 세우는 경비도 지원하여, 지진 당시 구호와 위로를 위해 '달려오지 못한' 죄스런 마음의 일부를 덜어냈다.

반면 비교적 최근(2015년 이후)에 이주한 F와 약 4년의 한국생활이 지난 H와 K는 단 한 번도 본국 방문을 하지 않았다. F는 네팔 방문 대신 2017년 초에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였고,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하여 출산과 육아로 4년의 세월을 보낸 H와 K는 해산구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광주에서 노동하고 있는 친정 언니와 외숙모와 가까이 살면서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네팔 방문이 절실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 역시 본국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 국내외 이주로 고향을 떠난 가족과 친지 및 이웃들이 모이는 네팔 최고의 힌두 축제인 '다사인'(Dasain)에 맞춰 네팔을 방문한다. 이 연구에서 본국 방문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사인' 축제에 맞춰 가족을 방문하였다. 네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원들이 본국 방문을 계획할 경우 서로 일정을 조정하여 다사인 무렵에 본국을 방문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이주여성들도 통신으로만 교류하던 해외에 체류하는 친족구성원을 고향에서 만나 축제음식을 즐기고 낯선 한국 땅에서 경험했던 소외된 감정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다사인파 같은 축제시기가 본국 방문을 위한 적기라 생각한다.

4) 친정 가족 구성원의 한국초청과 노동 기회 제공

F-6비자 소지를 한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등의 도움을 통해 출산과 육아지원, 결혼식 참석, 친지방문 및 여행 등의 목적으로 일정 범위의 본국 가족원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 출산과 자녀육아지원을 위한 초청 대상에는 이주여성의 부모 외에 부모가 사망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초청 범주에 포함된다. 네팔보다 고용 기회와 임금이 크게 높은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가족과 친족구성원이 열망하는 경우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가족에 대한 돌봄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초청된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F-1 방문동거 비자가 부여되는데, F-1 비자 소지자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매년 연장하여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성의 출산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출산 준비와 출산 후 몸조리 및 육아방식은 문화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출산과 산후 조리 등을 위해 본국 부모와 가족원의 입국은 자연스런 일로 인정된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은 6명인데, 이들 모두 출산을 전후로 하여 부모, 언니, 오빠와 올케, 외숙모를 초청하였다. 초청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현재 광주전남의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L의 부모는 딸의 출산 1개월 전에 해산구원을 위해 입국하여 3개월 뒤에 어머니는 네팔에 남아 있는 L의 세 명의 동생을 돌보기 위해 귀국하였다. 그러나 L의 아버지 N(52)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남지역에 체류하며 돼지축사에서 일하고 있다. N의 수입금의 거의 대부분은 네팔의 부인에게 송금되어 세 명의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N은 카트만두에 신축할 가옥 택지를 구입할 현금이 준비되는 시기까지 최대한 한국체류를 연장할

계획이다.

부모가 사망한 K의 외숙모 O(33)는 조카의 해산구원을 위해 2014년에 입국하여 약 10개월 정도 K의 아이 육아지원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2년 동안 전남 장성의 공단의 기숙사에 체류하며 노동하고 있다. K의 외숙모는 한국에서의 돈을 모아 시어머니 치료비로 썼던 빚을 상환하였으며 카트만두에 택지를 구입하여 새집을 건축할 계획이다. O는 매월 수입을 네팔의 남편에게 송금하여 남편의 전자수리 가게를 확장하고 택지를 구입하여 가옥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D는 2012년 출산 직후 노령의 어머니를 대신해 해산구원을 위해 오빠(46)와 올케(43)를 초청하였다. 오빠 부부는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현재 미등록자 신분으로 광주의 냉장고 손잡이 제조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D의 오빠와 올케는 카트만두에 집짓기 위한 택지구입과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간의 부부의 송금액은 카트만두의 믿을만한 친족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떠나올 때 8살이던 딸이 13살이 훌쩍 넘어 사춘기가 된 후 부모와 대화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주여성 H와 I의 친정언니와 어머니도 동생과 딸의 출산 전후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출산과 육아지원 후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광주에 있는 H의 친정언니의 남편은 2011년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현재 H의 친정언니부부는 광주에서 함께 거주하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H의 언니 수입의 일부는 네팔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와 용돈으로 지출되며, H의 형부 수입은 네팔로 송금되어 가옥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을 위해 은행에 저축되고 있다. I의 친정어머니는 2013년 I의 출산 시에 입국해 현재까지 공장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노동하고 있는데, 매달 네팔의 남편에게 송금한 현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을 확장하는 데에 투자되고 있다.

2015년에 결혼으로 입국한 F가 부모를 한국에 초청한 사례는 자신의 한국인과의 결혼이 가족 전체의 한국으로의 이주 통로를 만들어 준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F는 카트만두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현재의 남편과 간략한 혼인식을 하였다. 2015년부터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금지되자 육로를 통해 인접국가인 인도로 건너가 인도 남부 대도시 ‘벵갈루루’(Bangaluru)에서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에 5일이 소요되었다. 이미 네팔에서 간략한 결혼식을 했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명분으로 결혼식 초대장을 준비한 F 부부는 F의 부모를 2017년 2월 초에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F의 부모는 입국 이후 10여일 만에 전남의 지방 소재지 미역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임금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F의 아버지는 한국 입국 이전인 2014년까지 약 8년 동안 중동의 두바이와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 생활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낯선 현지에 적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소위 ‘베테랑’ 이주노동자이다. 한편 F의 남동생(20세)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위해 EPS TOPIK에 응시했으나 실패해 현재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한국으로의 이주라는 목표를 향해 준비 중이다. 또한 F의 여동생(21)은 19세의 나이로 이민중개업자를 통해 사이프러스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현지 임금이 너무 낮아 언니처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생각을 하고 있다. F 일가족의 국제이주 사례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F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장기적인 ‘가족의 이주 기획’(family migration project)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머지않아 남동생과 사이프러스의 여동생도 한국에 오게 되면 일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F의 농담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이주여성이 본국 가족원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주여성 본국 가족원의 한국 초청과 가족원에게 경제활동 기회의 제공은 이주여성이 할 수 있는 본국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원의 한국 체류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양면으로 작용한다. 부모와 언니 및 오빠 부부가 한국에서 노동하여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함으로써 이주여성이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낯선 한국 땅에 부모와 친인척이 함께 있어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모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친정식구가 휴무일에 이주여성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이주여성의 대부분 남편은 부인의 친정 가족원을 정중히 대접하지 않는다. 특히 네팔

이주여성 가족과의 장기적 동거는 남편들에게 가장 큰 불만 사항이다. 예컨대 이주여성 K와 약 3개월 동거하던 외숙모 O는 K와 분가하지 않으면 그녀의 다음 년도 체류연장에 필요한 한국인 남편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K의 남편으로부터 받아 O는 곧장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의 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존재를 아랑곳 하지 않고 네팔인과 네팔 문화에 대해 ‘대놓고’ 비하하는 태도를 자주 경험하였다. 이주여성들은 한국 남편의 네팔 가족과 네팔 국가에 대한 무시와 방문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5. 나가는 말

2016년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약 3만 3천명의 네팔 국적자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이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네팔인의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네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는 체류 지위가 다르지만 모두 초국적 이주자로서 본국에 가족구성원을 둔 ‘초국적 가족’의 일원이다. 전 지구화와 초국가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등장한 초국적 가족의 구성원인 국내 네팔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의 본국 가족원 사이에는 일상의 공유와 정서적 교류뿐만 아니라, 송금과 이주자와 본국 가족원의 네팔과 한국 방문 등 인적이고 물질적 교류가 일상화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부 네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본국 가족원에 대해 실천하는 초국적 돌봄의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네팔 결혼이주여성들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 네팔방문과 직접적 돌봄 실천, 가족의 한국 초청을 통한 노동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본국 가족에 대한 돌봄 실천을 초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와 네팔 사회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being in-between)라는 사실에 입각한 초국적 시각이 요구된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과 네팔 간에 형성된 초국적 돌봄 실천의 양상은 인적이고 물질적인 자원과 정서의 초국적인 흐름(flows)과 연결(links)이란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네팔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 환경으로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 때문에 남성들의 국제이주노동이 일상화 된지 오래 되었다. 게다가 2015년 4월 대지진의 발생은 이주노동자의 귀환을 지연시키고 개별 가정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이주의 흐름을 유인하였다. 이러한 네팔의 경제적 열악함은 이 연구의 일부 네팔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주의 결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바 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정의 이주여성은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물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잘 사는 나라’인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남성과의 혼인이 친정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으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의 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들은 네팔 부인의 가족원에게 물질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국 가족을 위한 송금은 오히려 이주여성 스스로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만들어낸 재원이 일부였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은 이주여성의 형제자매 서열에 따른 역할기대, 자녀의 여부, 경제활동 여부, 친정가족원의 국내 체류 여부 등에 따라 그 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만팔이면서 한국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은 이주 초기부터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과 본국방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송금지원은 못하지만, 출산과 육아지원 명목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장기적인 노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친정가족은 2~3개월 단기간의 육아지원을 끝내고 공장과 농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름없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초국적 돌봄, 정서적 지지와 출산 및 육아지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호혜적 돌봄의 교환’(reciprocal exchange of car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가족과 본국 가족 간에 형성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성격은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에서 시작하여 출산과 육아를 위한 친정가족원의 초청과 동거의 단계를 거쳐 자녀교육과 노후준비 과정에서 이주여성 본국 가족과의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이선 외, 2014). 그러나 이 연구의 네팔 결혼이주여성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들이 이주

여성 국가인 네팔과 네팔 방문에 대한 호감도와 유용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결혼 후 네팔을 방문한 한국인 남편이 거의 없고, 한국을 방문한 이주여성 가족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례함 그리고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네팔 가족원에 대한 무관심 등에서 드러난다. 또한 이주여성 스스로도 본국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불투명한 발전 전망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과 본국 가족이 지닌 사회·문화적 자본을 이용해 본국에서의 발전적인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네팔 이주여성가족과 본국 가족 간의 일련의 초국적 관계의 유지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주여성 가족의 자녀를 본국에 유학시키거나 노년을 본국에서 보낼 은퇴 계획 내에 본국 가족과의 연계를 찾기 힘들며,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에도 크게 기대할 형편이 아니다.

주

- 1) 인도아대륙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은 흔히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칼리 빠니’(kala pani, dark water)를 건넌으로써 자신의 카스트 지위를 상실하고 ‘부정 단 야만인’인 ‘몰레차’(mlecchas, polluting barbarians)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Lal, 2000, 122).
- 2) 2016년 12월 현재 인천광역시 32명, 대전광역시 18명, 부산광역시 59명, 대구광역시 22명, 서울특별시 85명 등으로 광주광역시의 네팔결혼이주여성의 인구수 41명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수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많은 편이다. 따라서 41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네팔 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네팔이주여성의 이주와 본국 가족과의 유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추론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광주광역시 소재 네팔 이주여성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었다. 특히 연구자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네팔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 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도 광주광역시 네팔이주여성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 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을 본국 가족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해 친정가족구성원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7명의 이주여성에게 가족과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2명의 여성만이 인터뷰를 허용하여 사례 수로는 적지만 2명의 가족원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4) 2009년 초에 국내에서 방영된 ‘꽃보다 남자’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드라마 속의 내용 및 화려한 한국의 배경에

- 매혹된 네팔 여성들이 2009년 이후 무척 많았다. 이 연구 대상의 과반수이상의 여성들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 남성과 극중 배경 등을 보고 한국생활에 대한 동경을 지니게 되었다.
- 5) K는 카트만두에서 모델 활동을 하여 한국에서 모델 생활의 꿈이 있었다. 17살 차이의 '늙은'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입국한 후 '도망치려는 마음'으로 입국했는데, 도망가면 비자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사는 네팔 출신 친구를 보고 도망가지 않던 차에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처럼 아이 엄마로 살고 있다.
 - 6) 2015년 대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누아코트(Nuwakot) 출신 A, E, F, G의 친정집들이 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임시구거지 마련을 위한 일부 현금을 송금했을 뿐이다. A는 이혼 상태이며, E와 G의 남편은 처가의 지진피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이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 7) 현재 광주에 10개월 정도 체류하며 노동하고 있는 L의 아버지 N은 본인의 직업이 페인트 작업공이라 일이 규칙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달 한국의 결혼한 딸의 송금이 절실했고, 딸이 3개월 동안 일자리가 없을 때조차도 자신들이 송금을 독촉했던 기억이 있다고 미안한 마음을 연구자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2016년 9월 딸 출산 시 해산구완을 위해 부부가 입국한 후 3개월 뒤에 부인은 네팔 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귀국하고 현재 N만 혼자 남아 전남지역 돼지축사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여 네팔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 8) 약 2주 동안 행해지는 다사인은 두루가(Durga)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로서 네팔 힌두들은 이 축제를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지리적 거리를 불문하고 자신의 고향의 가족과 친척을 방문한다. 축제 기간 약 1주일 동안 모든 관광서 등이 휴무상태에 들어가며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다.
 - 9) 이주여성 친정 가족원들이 소지한 대부분의 셀 폰은 이주여성이 방문 시에 직접 가져다 준 것이거나 인편으로 보낸 것들이다. 예컨대 이주여성 A는 네팔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7대의 셀 폰을 보냈으며 대부분의 이주여성들도 최소 4~5대의 셀 폰을 가족들에게 보낸 바 있다. 셀 폰을 보낸 대상은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 친가와 외가의 친족원까지 광범위하다.
 - 10) 네팔을 2회 방문한 B의 남편은 2017년 다사인에 B와 함께 네팔을 방문하여 B와 자신의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은퇴 후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주택 구입을 제안한 바 있다.
 - 11) 이 연구의 E와 G처럼 공장에 다니면서 수입이 있는 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들은 부인의 본국 방문 시에 항공료와 선물비용 등 일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들 남편들은 부인의 수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부인을 둘러싼 경비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문헌

- 김경학, 2014,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남아시아연구*, 20(2), 25-57.
- 김이선·이아름·황정미, 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8.
- 김태원, 2014, 생애구술사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 경험 분석: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1, 143-171.
- 김혜선, 2014,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 *이담복스*, 서울.
- 단효홍·김경학, 2015, 광주지역 한족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유대, *디아스포라연구*, 9(1), 265-28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016년 통계연보.
- 허(오)영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한울아카데미*, 서울.
- 이경, 2010, 네팔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세 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연, 2015, 네팔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와 임금노동, *디아스포라연구*, 9(2), 121-149.
- Adams, R. and J. Page, 2005, Do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3(10), 1645-1669.
- Adhikari, R., 2012, *Peril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Nurse Migration from Nepal*, Center for the Study of Labour and Mobility, Series 2.
- Baldassar, L., 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Aged Care: the mobility of care and the migrancy of ag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2), 275-297.
- Baldassar, L. & Baldock, C.V., 2000, Linking Migration and Family Studies: Transnational Migrants and Care of Ageing Parents, Biko Agozino(e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Migr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shgate, Aldershot, 61-89.
- Baldassar, L., Baldock, C.V. & Wilding, R., 2007, *Families Caring across Borders: Migration, Aging and Transnational Caregiving*, Palgrave

- Macmillan, London.
- Baldassar, L. and L. Merla(eds.), 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Routledge, New York.
- Cairncross, F., 1997, *The death of distance: ho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ill change our liv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 Cuong, B.T., Triung S.A., Daniel Goodkind, 2000, Vietnamese elderly amidst transformations in social welfare policy, D. Phillips (ed.), *Ageing in the Asia-Pacific Regions: Issues and Policies*, Routledge, London.
- Goulbourne, H., Reynolds, T., Solomins, J. and Zontini, E., 2010, *Transnational Families: Ethnicities, Identities and Social Capital*, Routledge, London.
- Gurung, K., Adhikari, J. and Sharma, B.M., 2011, *Remittance in Nepal, A Gender Perspective*, Nepal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Report.
- Heidi, K., 2005, *Gender Aspects of Outmigration for Labour in Nepal*, Nepal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Report.
- Knodel, J., Friedman, J., Truong, S. and Culong, B., 2000,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Vietnam: family size, sex composition, and the location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54(1), 89-104.
- Lal, V., 2000, *Chalo Jahaji: On a Journey through Indenture in Fiji*, ANU Press, Canberra.
- Mishra, M., 2012, Women's Access to Education in Nepal: Intergenerational Change, *Daulagiri Journal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6, 49-383.
- Ojha, G., 2015, *Out Bound Nepalese Women Migrant: Reconsidering Women's Migration from Agency Perspectives*, LAMBERT Academic Publishing, Deutschland.
- Shrestha, M., 2017, Push and Pull : A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Nepal,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7965 World Bank, Washington, DC.
- Thai, H. C., 2012, The dual roles of transnational daughters and transnational wives: monetary intentions, expectations and dilemmas, *Global Networks*, 12(2), 1471-0374.
- Thomas, C.,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27, 649-669.
- Vertovec, S., 2004, Cheap Calls: the social glue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4(2), 219-224.
- Wilding, R., 2006, Virtual Intimacies? families communicating across transnational contexts, *Global Networks*, 6(2), 125-142.
- 교신 : 김경학,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이메일: khkim@jnu.ac.kr, 전화: 062-530-2693)
- Correspondence : Kim, Kyunghak, Department of Anthrop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ung 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E-mail: khkim@jnu.ac.kr, Tel: +82-62-530-2693)
- (접수: 2017.07.28, 수정: 2017.08.18, 채택: 2017.08.25)